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99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9.

이 선 주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이선주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상위법령의 의무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 안 제2조 정의 규정에는 “인증” 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일치시키고,
- 안 제3조 적용대상 규정을 2019년 12월 3일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4일에 시행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 시설을 조례에 맞추고자 하며,
- 안 제4조 인증기준 규정은 기존에 준용하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2015년 8월 3일 폐지되고, 2015년 8월 3일 일부개정되어 시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된 변경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준용 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확산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105
----------	----------

발의일자: 2023. 9. 1.

발의자: 이선주, 황국주, 김장관, 도하석
장호섭, 남현주, 박왕규, 박종길
박정환

1. 개정이유

- 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의무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함 (안 제1조)
- 나. 제2조 정의 규정에 “인증”의 정의를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일치시키고자 개정함 (안 제2조)
- 다. 제3조 적용대상 규정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을 조례에 맞추고자 개정함 (안 제3조)
- 라. 제4조 인증기준 규정이 준용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개정함 (안 제4조)
- 마. 제8조의 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함 (안 제8조의 2)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불임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불임 2
- 다. 관계법령: 불임 3
- 라. 비용추계: 비대상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4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호의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한다.

제7조 중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u> 달서구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략)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p>	<p>제1조(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등-----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현행과 같음)2.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p>

<p><u>호와 같다</u></p> <p>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300m²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로 한다. 다만 재해위험구역, 침수우려 지역, 지형 및 주변여건상 인증이 곤란한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p> <p>2.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p> <p>제4조(인증기준)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른다.</p> <p>제5조(인증취득)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제3조제1호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p>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로 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p>제4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p> <p>제5조(인증취득)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건축물 등----- ----- ----- -----.</p>
---	--

제6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인증취득 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절차 면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

<신 설>

제6조(사후관리) ① -----
공공건축물 등-----
-----.

② -----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

제7조(행정절차 면제) -----
----- 공공건축물 등-----

-----.

제8조의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임3

관계법령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 중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중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 · 중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 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2. 제2종 근린생활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

시설	· 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공연장 및 관람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간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간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	화장시설, 봉안당

설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시설주	대상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출자 · 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시행 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9호, 2015. 8. 3.,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3-8호)
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5-599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 시기 및 명판
도안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0-
691호)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
2013-8호)은 폐지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일부개정]

[시행 2021. 12. 4.]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임4

현행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4.11 조례 제10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 인증 ” 이라 한다)이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 설계 · 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가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로 한다. 다만 재해위험구역, 침수우려지역, 지형 및

주변여건상 인증이 곤란한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제4조(인증기준)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5조(인증취득)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인증취득 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절차 면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인증 활성화) 구청장은 민간이 건축주인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실시) 구청장은 인증의 정착을 위해 주민, 건축 관계자 및 공

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